

[별첨 1]

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

평점요소	배점 기준			비고	
	총배점	기준	점수		
장애인등급	20	1급	20	○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○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	
		2급	18		
		3급	16		
		4급	9		
		5급	7		
		6급	5		
무주택 세대주 기간	30	10년 경과자	30	○본인거주 책임 ○장애인 등록시점부터 무주택 세대주기간	
		8년 경과자	20		
		6년 경과자	10		
		4년 경과자	5		
		2년 경과자	2		
세대원 중 장애인 유·무	10	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	2인 이상 1인	10 5	○세대주 미포함
세대원구성	20	5인 이상	20	○동거인 미포함 ○세대주 포함	
		4인	16		
		3인	12		
		2인	8		
		단독세대	4		
65세이상인 장애인 유·무	5	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	5	○세대주 미포함	
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	15	5년 이상	15	○실제 거주기간 ○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 우선배려	
		4년	12		
		3년	9		
		2년	6		
		1년	3		
		1년 미만	1		

- 「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」은,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우리시 (서울특별시)
에서 세대주로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.(세대원으로서의 기간도 예외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으로서
 합산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적용)

[별첨 2] 별지 제1호 서식

공동주택 특별공급(분양·임대) 알선 신청서

신청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전화(주택,사무실) :				휴대폰 :	
	장애인			장애인등급			
가구원수			세대원중 장애인수 (세대주 미포함)		명		
			65세이상 장애인수 (세대주 미포함)		명		
무주택기간	년						
신청구분	지역		분양		면적	분양면적	
		임대				전용면적	
대리신청의 경우	대리신청인 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
	※ [별첨 3]의 위임장을 첨부 바랍니다.						
<p>상기 주택의 분양(임대)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				

○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

○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 후부터 산정

○ 신청시 유의사항

-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1회에 한정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(85㎡이하 분양주택은 '05.3.9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, 85㎡초과 분양주택은 '06.2.24이후 사업계획승인 단지)의 당첨자는 85㎡이하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5년, 그 외 지역에서는 3년, 85㎡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수도권 지역에서는 3년, 그 외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음